



초등학교 학생의 부모님들을 위한
불링 학교폭력 대처방안

Call it Safe: A parent guide for dealing with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s

2003년 판



BCCPAC

Korean

본 안내는 초등학교 학생의 부모님들과 학부모자문위원회(이하: PAC) 지도자들을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할 것입니다:

- ✓ 불링(BULLYING)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의문점들의 답변과 자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안내
- ✓ 학부모자문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안내정보

이 가이드는 불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효과 있는 방지 프로그램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자녀"와 "학생"이란 낱말은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하며, "학부모"의 정의는 BC 학교법령에서 사용된 아래의 것과 동일합니다:

- a) 학생이나 자녀의 보호자,
- b) 학생이나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가진 사람,
- c) 평상시 학생이나 자녀를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

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즉 친척이나 가족친구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대상에는 이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C 학부모자문위원회연맹 (BCCPAC)에서는 이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준 BC주 교육부의 도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목차

불링이란?	1
불리는 누구인가?	2
학부모의 대응책	3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3
대처방안 결정	3
학교로 도움 청하기	4
올바른 대응절차	5
학교 외부의 도움 청하기	5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6
자녀가 방관자인 경우	7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7
귀하의 항소권리	9
자가보조 안내	10
학부모자문위원회(PAC)의 역할	12
귀하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	13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 권리 및 책임	15
추천도서 목록	18
기타 참고자원	18

불링이란?

불링의 예

육체적:

- 때리거나 꼬집는 행위, 주먹이나 발로 차는 행위
- 폐쇄된 장소에 가두는 행위
-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는 행위
- 금품갈취행위

언어적:

- 별명 부르기
- 원치 않는 놀림행위
- 유언비어 퍼뜨리기
- 인종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인 욕지거리

사회적:

- 집단 따돌림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낙서
- 위협적인 쪽지나 편지, 이메일 혹은 전화
- 위협적인 언사, 행위 혹은 무기소지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환영받는 학습환경에서 학업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과 교무직원들도 희롱행위가 근절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과 교무직원들의 권리는 교육위원회와 체결한 노조 협약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다.

불리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뜻한다. 불리는 항상 피해자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 우월한 입장은 신체적인 조건, 힘, 신분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지지를 받음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불링에는 3가지 종류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

- ✓ 육체적,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소지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 ✓ 언어적, 모욕을 주거나 별명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 ✓ 사회적, 그룹이나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왕따행위 등이다.

불링의 증후는 외관상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불링을 당하거나 행하는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 ✓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 ✓ 행동의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잠을 못 자거나 입맛이 없는 모습.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아침에 아프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 형제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
- ✓ 집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거나 등교하는 길을 바꾸는 행위. 무단결석 행위.
- ✓ 찢어진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거나 이유 없는 상처. 출처를 알 수 없는 새 옷이나 소지품, 현금 등.
- ✓ 학교에서 벌칙을 받을만한 수준의 행동을 남에게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 ✓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게일과 그녀의 친구, 제인은 수업시간이 끝난 뒤 몇 분간 더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뒷정리를 하고 막 교실 문을 나서던 때였다. 문밖에서 서서거리는 몇 명의 여학생들이 교실 문을 나서던 게일과 제인을 날카로운 눈으로 찌려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여학생들 앞을 지나던 순간 그들 중의 한 명이 "멍청이"라고 그녀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여학생들도 야유를 던지기 시작했다. 게일과 제인은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

¹ 다수의 단체들이 자체내의 노조와의 협약에서 희롱행위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BC교사노조와 교육부의 단체협약서 (PCA)에서 내리는 희롱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적희롱행위; 혹은
-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느낌을 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행위. 그리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행위; 혹은
- 상대방을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위로서 1회 혹은 상습적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 언사 혹은 물질 및 전시행위; 혹은
-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를 상사입장에서의 요구하는 행위, 가해자가 상식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온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 혹은
- 위협적인 행위나 언사 혹은 구슬림 및 블랙메일식으로 이용하는 집권남용행위.

불리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대개 위협적인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모른다. 피해 어린이들은 별명 부르기, 놀리기, 따돌림 당하기 등의 경험을 하면서 학교란 곳이 위협하고 괴로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제대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불링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 학업성적 저하
- 학교 출석률 저하
-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훼손
- 피해학생의 방어적 폭력행위 초래

대개의 경우, 이러한 불링의 피해는 피해자 학생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극단의 경우, 당사자 혹은 그 주위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서 자살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불링을 근절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와 가족, 학교, 학군교육진, 지역사회 등이 불리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해결책을 서로 모두가 협력하여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불리는 누구인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라도 있다. 폭력행위는 학교 내 혹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동료학생
- 기타 어린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 성인 (예: 교육진, 자원봉사자, 학부모)

불리 행위는 배운 행위이며, 보다 바람직한 행위로 교체될 수 있는 행위이다. 조사에 의하면 불리 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남녀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통계되었다. 약 30% 학교어린이들이 20%의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행위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Focus on Bullying: A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ommunities, 6-13장).

불리행위는 2-3세의 유아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저지하지 못할 경우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좀더 그 상태가 심해진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이러한 행위를 그치게 하는데는 조기발견과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누가 불리학생들이며 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BC 교육부에서 발간한 다음 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Helping our kids live violence free: A parent's guide (K-7 학년 대상). Focus on Bullying, 위 참조. (본 안내서 17장에 나와있는 추천도서 목록 참조)

http://www.bced.gov.bc.ca/live_vf/

교육정책훈령에서는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의 한가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인격과 사회성 계발 - 학생들의 자아의식과 솔선수범 태도를 계발시킨다...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아이디어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운다.

본 부에서 명시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동기준은 본 안내서 17장을 참조한다.

올해 10세의 제이미는 이번 주에 벌써 세 번째 옷에 진흙을 묻히고 옷도리가 찢어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제이미에게 아이들과 터치 풋볼을 하다가 또 그랬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의 옷차림새에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제이미는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대답을 중얼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그날 저녁 아들 방에 들어온 엄마는 제이미가 숙제도 하지 않고 펼쳐만 놓은 채로 침대에 드러누운 그의 모습을 보았다. 걱정하는 엄마의 질문에 결국 제이미는 지난 얼마동안 자신의 점심비를 몇 명의 또래학생들이 갈취를 하고 있으며, 그를 못살게 굴고 있다고 실토했다. 제이미는 학교가 싫다고 불평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학부모의 대응책

"한 아이의 교육과 지도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근본원리는 그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먼저 있다."

유엔 아동헌장, 제 7장, 1959

그레그는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게이"라고 놀리움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그레그가 운동도 같이 하지 않고 친구들도 많이 없기 때문이다. 놀림을 당해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놀림을 당한다고 밝히고 싶지도 않고 또한 불평을 해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몇 주간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그레그는 그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대항을 하였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그레그는 정학처분을 학교에서 받는다. 그레그는 자기 부모에게 학교를 옮겨달라고 조른다.

방관하는 자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상황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불링에 대한 초기 발견과 조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자녀에게 사고 났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며, 신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여 준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녀가 불리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자신이 불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이유에는:

- ✓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걱정
- ✓ 자신의 문제가 그 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또는 성장과정의 하나라는 생각
-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 ✓ 자신이 고자질 쟁이라고 놀림을 받을까 두려운 생각
- ✓ 부모가 개입됨으로서 문제가 더 복잡해 질 것 같다는 생각
- ✓ 부모가 개입하더라도 자신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 ✓ 불리를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 등이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문을 열 것이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부모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관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자:

- ✓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불리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 ✓ 어떠한 정보가 내게 필요한가?
- ✓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 ✓ 대응책을 강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대응방안 결정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을 때, 부모의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가 개입하여야 하는지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상황설명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고자질"과 "신고"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신고를 하는 행위는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다. 신고를 하는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학교로 도움 청하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이거나 방관자 혹은 가해자일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방식은 동일하다. 먼저, 학교의 담당 교직원에게 상황을 알린다. 대개의 경우 담당 교직원이란:

교사 -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교사가 감독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 예를 들면, 교실이나 체육관 탈의실 같은 경우.

교장 -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복도, 로커, 버스 정거장, 특별활동 시간, 등하교 시 등과 같이 항상 감독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을 찾는다.

그 위의 책임자를 찾아야 되는 경우 - 학교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학군의 교육감, 교육장 대리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을 찾도록 한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 누가, 언제 신고사항을 조사할 것인가?
- ✓ 조사하는 이로부터 언제쯤 조사결과를 연락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 학교폭력 사고를 신고 받은 학교측에게 불평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가해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여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 ✓ 후일 보복행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의 이름 및 기타 인적사항을 어떻게 비밀로 보장할 것인가?
- ✓ 자녀가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후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지역학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장은 학교행정 및 재학생들의 품행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것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법령 265/89

학교를 상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담당인의 상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낸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말자. 10장에 있는 절취용 페이지를 이용한다.

자녀를 위한 옹호 과정에서 부모는 담당책임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옹호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옹호단체, Advocacy Project, 무료장거리 전화 1-888-351-9834로 문의한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청할만한 단체들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본 안내서에 나와있는 자료난을 참조한다.

올바른 대응절차

BC 교사노조의 윤리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교사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행동을 취할 때, 그들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심을 갖고 행동한다. 학생 개인의 권리와 감수성을 감안하여 사리분별이 있는 태도로 대한다."

이상은 전문인과 윤리적인 교사의 모델 강령이다.

자녀의 사태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데 해당 교육학군의 활동과 결정을 좌우하는 학군 정책 및 절차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각 학군마다 불리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과 절차가 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복합문화 정책, 반차별, 반폭력 정책 및 또는 학생행동규범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학교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원리 역할을 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줄 아는 학교사회
- 불리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학교사회
-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사회

지역 교육청으로 안전학교생활 규범의 사본을 요청하여 자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학교 외부의 도움 청하기

학교 내에서 자녀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 외부단체의 개입에 대한 결정은 학교측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BC지역 경찰기관들은 현지 학교와 청소년 서비스 단체들과 협력하여 불리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취해오고 있다. 자녀의 학교와 현지경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부모로서의 정당한 질문의 하나이다.

만일 자녀의 신변안전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바로 현지 경찰로 신고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건의 배경과 자신이 취한 행동을 메모한 문서기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기록은 자녀의 어려움을 혹시 다른 어린이들도 겪고 있는지를 가려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시에는 관련지역의 불평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에 연관된 문제일 경우 주 아동 및 가정부에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 18장 참조)

"학교측에서 불량학생을 경찰에 해야되는 기준은? ... 학교 행정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유지할 책임을 맡고 있다. 그 책임의 한 부분으로 소속학생의 신변안전에 대한 의심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개입은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형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시사하는 역할도 한다."

안전학교생활지침서: 교장 및 교감을 위한 안내서, 144장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자녀가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찌면 이미 아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시도한 후 인지도 모른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교육의 한 가지이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혼자서 불리에 맞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 연락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부모의 개입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가 불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지했을 때 즉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에게 연락을 취한다. 본 안내서 4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불평사항 신고 시 즉시 상황조사를 실시해 줄 것
- ✓ 불평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답과 만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즉시 대책을 세워 줄 것
- ✓ 이후 자녀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불리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의 대책
- ✓ 전학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 학생이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 학생이 전학을 하도록 요구
- ✓ 불리 대상이 됨으로서 얻은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카운슬링
- ✓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교외부기관(경찰이나 정신건강 의료원)에 대한 안내정보
- ✓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위협행위 때문에 자녀가 등교를 두려워할 경우, 전학의 기회

이외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들 (사태가 심각한 경우를 포함):

- ✓ 모든 회의장소에 학부모가 원하는 보조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 어떻게 조사과정이 비밀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 ✓ 자녀가 조사관과 면담을 하게 될 경우, 면담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나 문서기록 사본

"학교 전인원이 불리방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하려면, 우선 불리와 학교폭력이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원모두가 자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대책임 사상을 고취시키고 학부모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과반수 인구"와 학부모의 지원은 부정적인 또래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소수에 대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Focus on Bullying,
교육부와 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 13장

다음은 불평신고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의 사례이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항 E. 2, PCA:

"고용인은 불평신고를 접수받았을 때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희롱불평신고를 처리한 전문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자는 같은 성별의 조사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실현이 가능할 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구제 절차

d. 희롱행위의 결과로 직원이 전근을 하게 되는 경우, 전근을 하는 직원은 가해자이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전근을 요청했을 때에는 예외이다.

반폭력 청소년 전화는 청소년들이 정보전달, 범죄행위 방지 및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전화 서비스이다. 전화번호는 1-800-680-4264 (BC 주)이며, 웹사이트 www.takingastand.com를 통하여 이메일 연락도 가능하다.

"...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폴 오커너,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999, 22:437-452

"불링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그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링이 주위 또래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전반적인 입장에서의 중재가 필요하며, 이것은 또래들이 불링행위의 악영향을 인식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폴 오커너,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999, 22:437-452

자녀가 방관자인 경우

자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목격한 불링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그러한 학교폭력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됨을 설명해준다.

불리 행위를 목격하는 다수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여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이나 부모가:

- ▶ 불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 ▶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봐
- ▶ 사태의 크기가 커지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까봐
- ▶ 다른 학생이나 교사진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까봐

불리 행위의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간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폭력행위 근절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침묵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만 만든다.

자녀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녀가 용기 있게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본 안내서의 4장과 6장을 참조한다.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자녀가 저지른 불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모든 학생들과 교육진의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사실을 받아드리고 학교와 협조하여 무엇이 자녀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지 그 동기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같이 강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억할 사항은 용납되지 않는 것은 자녀의 행위이지 자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과정이나 징계처벌 과정에 자녀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 학교의 소속학군이나 지역학부모교문위원회(DPAC)에는 1999년 교육부가 발간한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s라는 책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정학대신의 처벌방식과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전략, 그리고 문제학생들의 품행계발에 관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 ✓ 자녀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정학과 같은 처벌의 대상일 경우, 거기에 적용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 16세 미만의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내리는 경우, 지역 학군에서는 반드시 별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학군이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자녀를 위한 정신감정평가나 추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으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 자신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모든 면접과정 동안에 동석할 수 있는 보조인을 자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다.
- ✓ 항소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귀하의 항소권리", 9장 참조)
- ✓ 만일 학교측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법률구조 사무실의 도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청소년범죄처벌법 2003년 4월에 의거하면 미성년 나이의 자녀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억류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 경찰이나 권한이 있는 성인(예를 들면, 학교 교장)으로부터 불리사건으로 인하여 취조나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 자녀는 그 장소에 성인을 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BC 학교법령 제 73장 (3)항에 의거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처벌... "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려분별이 확실하고 단호하되 육체적인 징계는 하지 않아야 된다."

불링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 불리방지
- 분노관리
- 갈등해결
- 회복적 사회정의 (Focus on Bullying, 76장 참조)
- 멘토링
- 학교 카운슬링
- 또래 카운슬링
- 또래 중재
-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자녀에게 도움이 될만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의를 해본 뒤,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자녀의 삶에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부모의 후원이 있을 때 보다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는 부모는 Seddon, McLelland & Lajoie의 How Parents Can Take Action Against Bullying이라는 책을 참조한다 (본 책자 17장 참조).

회복적 사회정의의 프로그램은 "갈등을 해결하고 청소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청소년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행동의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는데 있다."

특별프로그램부, BC 교육,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 p. 36

귀하의 항소권리

지역학부모고문위원회(DPAC)에서 항소절차에 대한 도움을 제공 받을만한 옹호인이나 후견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BCCPA 옹호프로젝트의 무료장거리 전화 메시지 번호는 1-888-351-9834이다.

항소절차에 대한 관련문서는 해당 학교나 학군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외 학부모고문위원회(PACs)나 지역학부모고문위원회(DPAC)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언제라도 행정감찰관 사무실로 다음과 같이 불평을 신고할 수 있다:

무료 장거리 전화: 1-800-567-3247 (BC주 전역) 1-800-667-1303(TYY) 혹은 빅토리아 사무실 (250) 387-5855 또는 (250) 387-5446(빅토리아 TTY), 웹사이트: www.ombud.gov.bc.ca
팩스: 빅토리아 (250) 387-0198, 밴쿠버 (604) 660-1691
우편주소: 931 Fort Street
Victoria, BC
V8V 3K3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와 자녀는 내려진 결정사항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항소절차는 다른 절차와는 달리 그 해당 학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학군의 최근 항소절차문과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도록 한다.

BC 학교법령의 제 13장(항소)에 의거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교육, 건강 혹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진이 내리는 결정이나 미결정에 대한 재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학군은 학부모와 학생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항소결과 후 교육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 ✓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항소 날짜를 잡도록 요구한다.
- ✓ 스태프가 제공하는 정보를 듣는 날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 정보는 발표일 전에 미리 받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 학부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도 좋은지 물어본다.
- ✓ 항소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다:
 - 우리측의 자료를 발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
 - 누가 참석을 하는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상대측에게 질문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가?
 - 상대측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인가?
- ✓ 항소 과정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한다.

현지 교육위원회를 통한 항소절차가 불공평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귀하나 귀하의 자녀는 행정감찰관에게 불평신고를 할 수가 있다. 행정감찰관은 과거절차를 조사한 후 추천 사항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불평신고 용지는 행정감찰관 사무실이나 웹사이트: www.ombud.gov.bc.ca/complaint_form.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0장 자가보조 안내를 이용하여 교육위원회로의 항소신청을 기록 문서화하면 불평신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준비된다.

취한 행동: 후일 참고를 위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련 대화 및 교신 내용을 기록한다. 필요하면 추가 페이지를 작성하여 같이 보관한다.

기록 시 참고사항:

- 누구와 대화를 했는가
- 언제
- 어떤 방식으로? 편지, 전화, 팩스 등등
- 누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가
- 어떤 조사를 하기로 했는가
- 어떠한 협의를 보았는가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관이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는가
- 언제 우리가 조사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가?
- 학교측의 자녀를 위한 보호 방식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겠다고 했는가
-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카운슬링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자녀가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 추가적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하는가
-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가
- 본인이나 가족직원 중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_____

결과: _____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_____

결과: _____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_____

결과: _____

날짜/시간: _____ 담당자: _____

접촉방식: 전화 방문 편지

용건: _____

결과: _____

학부모자문위원회(PAC와 DPACs)의 하는 역할

학교와 학군규정만 가지고는 불링같은 학교폭력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 관련 행정원, 학교 교사 및 후원진,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가 정의, 존중, 동정심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현지 학군이나 지역 학부모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기에 적당한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회담, 설문조사,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불링에 대한 경험담을 수집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교와 학군의 반응에 대한 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정보와 BCCPAC, PACs, DPACs 등의 조직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원은 학교기관으로 하여금 현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PACs와 DPACs와 같은 학부모자문위원회에서는 불링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 ✓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측의 노력에 대한 평가 (13장, "귀하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란 참조)
- ✓ 안전학교 위원회 조직 및 참여 추천
- ✓ 안전학교 위원회 모임에 동참
- ✓ 불링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사를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하여 초청
- ✓ 학군지역의 다른 학부모자문위원회와 협동하여 학군 전역에 대한 안전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도 장려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는 학부모자문위원회 모임은 학교에 관련된 제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학교 교장과 교육위원회에게 고문역할을 한다.

학교법령, 제 8장 (4)절

자녀의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

자녀의 학교에 대한 안전환경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자로
 는 BC 교육부와 법무차관부, 현 시
 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에서 발간
 한 "Safe School Planning Guide
 and Focus on Bullying"을 참
 조하시기 바란다. 새로 개정된
 "Safe School Planning Guide"는
 2003년 가을에 발간된 예정이다.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
 행위를 "lookism"이라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학부모가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학교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녀의 초등학교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모임이다. 현재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학교안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모임의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재학생, 교사, 교무진, 후원 스태프, 학부모 및 방문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사이에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 ✓ 우리 아이의 학교 학생들의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성인,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의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학생들과 성인들의 윤리강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 성적취향, 성별 혹은 인종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꾸밈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인가?
 -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행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가? 옷차림이나 낮은 생활수준, 혹은 기타 특징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없는가?
 - 인종적 차별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성 차별주의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가? 성적인 희롱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 동성애 혐오현상이 학교 내에 존재하는가? 개별적 성적취향에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인가?
- ✓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학교에서 장려하는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어느 수준까지 장려되고 있는가?
- ✓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내에서 발생한 불링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는가? 지난 2년 동안은? 이 중에 문서화되고 문제가 해결 된 사건은 몇인가? 이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조사를 시도해 보았는가?
- ✓ 성인과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불링사건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고 문제를 해결 보았는가? 추적조사는 어떻게 실시되었는가?
- ✓ 자녀의 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과목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 ✓ 불리 행위를 방지하고 중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 ✓ 불링에 대한 예방과 대응조치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학교 스태프, 학생, 학부모 및 기타 지역사회 일원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기회는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 ✓ 불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학교 방침과 절차는 무엇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안내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BC 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와 BC교육부에서는 BC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안전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안전한 BC학교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 정책의 일 부분으로 "Focus on Bullying: A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ommunities"가 발간되었다. "Focus on Bullying"에서는 학교안전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리 학교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일곱 단계를 이용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는 차례순이 매겨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해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맞추어 조정도 가능하다. 일곱 단계는:

- 1단계: 모임결성
 - 2단계: 학부모 참여 유도
 - 3단계: 학생 참여 유도
 - 4단계: 모임의 목적 설정 및 문서화
 - 5단계: 감시계획 설립
 - 6단계: 대응책 마련
 - 7단계: 대응책 실시 및 모니터링
- (본 안내문 17장의 추천도서 목록 참조)

학교사회의 모든 임원(학생, 교사, 학부모 및 행정팀)이 개입된 학교차원의 반 불링 대응책은 불링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벌칙을 설정하여 모든 형태의 학교폭력행위가 근절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학교차원의 대응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불링사태가 발생했을 시, 성인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어린이를 보호해 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의 대응책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전학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지원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폴 오커너,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999, 22:437-452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권리 및 책임

불링으로 인하여 개별적 혹은 학교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해결은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BC학교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개요이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처벌법 2003년 4월이나 인권보호헌장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자녀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권한있는 책임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학부모는:

- ✓ 자녀가 학교에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 ✓ 자녀의 학교수업 결석여부, 행동 및 학업진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 ✓ 교육위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자녀의 학교와 학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정보 중에는 자녀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 ✓ 자녀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대로, 자녀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이 귀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나 소속 임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미결정이 자녀의 교육,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다.
- ✓ 학부모고문위원회(PAC)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교육위원회의 소유재산이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파괴되거나 훼손, 분실, 개조시키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자녀와 같이 혹은 별도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교육목표와 정책 등 학생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건전하고 후원적인 자녀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학교제도를 배양 보존하고, 자녀의 교육을 같이 책임질 의무도 갖고 있다.

BC교육부, 교육정책훈령

학생은:

- ✓ 5세에서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 1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 ✓ 학교의 규칙, 정책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 학교의 규칙, 정책 및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정학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16세 혹은 그 미만의 나이일 경우, 정학처분 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자신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교사나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자신의 교육, 건강 혹은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 부모와 같이 혹은 별도로 교육위원회의 소유재산을 일부러 혹은 실수로 파괴하거나 훼손, 분실, 개조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BC 학교법령, 교육부의 규칙과 법규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의무사항이외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유엔의 어린이 권리 헌장 그리고 일반사법에서 제시하는 유아 및 청소년 권리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1996년 BCCPAC, BC 교장 및 교감협회, BC교사연맹에서 발간한 "Building Partnerships in Schools"라는 제목의 핸드북을 참조한다. 자녀 학교의 PAC, 교장 혹은 학군사무실을 통하여 사본을 구하거나 BCCPAC 사무실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BC학교법령과 교육부의 규칙과 법규도 소속학군을 통해서 혹은 교육부 사무실에서 구할 수가 있다 (본 안내문 17장 참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일관된 교육의 혜택을 누릴 기회,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짜는데 동참할 기회, 자신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선택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도 있다."

BC교육부,
교육정책훈령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타 권리들:

-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 자신들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
-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숙고될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결정에 대하여 알 권리

안전하고 정연한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올바른 태도를 교육하는데 일반규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법령(제 76장(2)절)에서는 각 학교마다 "최고의 도덕"을 학생들에게 고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책임을 완수하는데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의 하나가 학교생활규칙 설립 및 적용이다.

Keeping Schools Safe: A practical guide for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안전학교유지, 교장과 교감을 위한 안내서), 89장

추천도서 및 비디오 목록

BCCPAC. Speaking Up! A parent guide to advocating for students in public schools (공립학교제도에서 학생들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1999

BCCPAC과 Open School. Speaking Up! Parents Advocating for Students in Public Schools (공립학교제도 내에서 학생들을 옹호하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 비디오). 1999

BCCPAC, BC교장 및 교감연맹, BC교사연맹. Building Partnerships in Schools: A Handbook. 1996

BC원주민사업부. A Guide to Aboriginal Organizations and Services in British Columbia BC주 원주민 단체 및 서비스 안내). 2000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 지역사회프로그램 담당부. Taking A Stand (의지 굳히기). 제 2판. 1998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와 교육부. Safe School Planning Guide (안전한 학교설립 안내). 1999 (2003년 가을 개정판 발간예정)

BC교육부. Helping our kids live violence free: A parent's guide (폭력 없는 삶을 살도록 자녀돕기: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8-12학년 용)). 2000

BC교육부. Performance Standards - Social Responsibility (평가기준 - 사회적 책임).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www.bced.gov.bc.ca/classroom_assessment/perf_stands/social_resp.htm

BC교육부. Focus on suspension. A Resource for Schools (정학처벌). 1999

BC시민안전 및 법무차관부와 교육부, Focus on Bullying: A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ommunities (초점, 초등학교 불리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1998

교육에서 발간하는 참고문헌 온라인 리스트: www.bced.gov.bc.ca/publications.htm. Special Education Services: A Manual of Polic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Parent's Guide to Individual Education Planning (IEP), Manual of School Law, K-12 Policy Manual for BC Schools (특수교육서비스: 방침안내서, 절차 및 안내, 학부모를 위한 개별적교육설계(IEP) 안내, 학교법령 안내서, BC주 K-12학년 정책안내서 등등).

BC교장 및 교감협회와 BC교육이사연맹. Keeping Schools Safe: A practical guide for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안전학교 유지: 교장 및 교감을 위한 안내서, BC주의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의 일부분). 1999년 6월

클락, 주디스 A., 이콜스, 알랜 C. A Guide to Schools Legislation in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법령에 대한 안내서). 제 2판. Eduserv. In. 1999

어린이들을 위한 위원회. Second Step: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Grades 1-3. 제공: 172-20th Ave., Seattle, Washington 98122. 전화: (206) 322-5050

오커너, 폴, 페플러, 데브라 및 크레이그, 웬디.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999, 22: 437-452

BC행정감찰관. Fair Schools Public Report No. 35. 1995년 5월

록솔리드 파운데이션과 빅토리아대학교 청소년 및 사회조사단. Rock Solid Children, Youth, and Adults: Creating a Responsiv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튼튼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건강사회환경 구축). 비디오. 1999.

로허, 에릭 M. An Educator's Guide to Violence in Schools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자를 위한 안내서). Canada Law Book Inc. 1997.

세돈, 신디, 맥리란, 앨리슨과 라호이, 기즐. How Parents Can take Action Against Bullying (학교 내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대응방법). Bully B'Ware Productions. Hemlock Press. 2000

기타 참고자료

The 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 Agencies (AMSSA): 비정치, 비영리. 전 BC지역에 있는 85개의 복합문화단체,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단체와 관련 단체들의 모임이다. 전화: (604) 718-2777 팩스: (604) 298-0747, 이메일: amssa@amssa.org. 웹사이트: www.amssa.org

BC인권위원회: 차별대우에 대한 불평신고에 조사 및 중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권헌장 내용의 실현을 장려하고 있는 단체.

빅토리아 시: (250) 387-3710, 팩스: (250) 387-3643

밴쿠버 시: (604) 660-6811, 팩스: (604) 660-0195

기타 BC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0876

청각장애인용 전화 (TDD): 밴쿠버: (604) 660-2252, 빅토리아: (250) 953-4911

BC 아동 및 가정개발부: BC주 전 지역에 연락 사무실이 있으며, 업무는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월-금요일 근무하고 있다. 근처의 사무실을 찾으려면 전화번호부 블루페이지를 참조한다. 이 부서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체적 혹은 성적학대, 혹은 성적착취 행위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전화다이얼 "O"를 누른 뒤 교환에게 BC Children's 헬프라인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1-800-663-9122 혹은 TTY 1-800-667-4770로 직접 신고를 한다. 이 부서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mcf.gov.bc.ca> 이다.

BC 지역사회, 원주민 및 여성 서비스부: 복합문화, 인종차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BC주 신 이주자를 위한 가이드"를 6개 국어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 민족 및 복합문화별 BC 이민자 서비스 단체의 연락처를 담은 전화번호부와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학교: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도 발간하고 있다. 전화: (604) 660-2203, 팩스: (604) 660-1150.

응급사태에 당면한 BC가족들을 위한 모임: BC주 전역에 걸쳐 "학부모 후원 서클"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대화향상, 문제해결, 양육법 등에 관한 토의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고 배운다. 전화: (604) 669-1616, 팩스: (604) 669-1636, 무료장거리전화: 1-800-665-6880.

BC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방해되는 괴롭힘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한 성공담, 정보안내, 자원안내, 교육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BC 전역의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경찰,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등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월-금. 문의 무료장거리전화: 1-888-224-SAFE(7233). 웹사이트: www.safeschools.gov.bc.ca

보이즈 앤 걸즈 클럽: "학부모 모두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마찰이 예상되는 청소년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이즈 앤 걸즈클럽이 후원을 하고 있다.

BC안내: 주 정부의 각종 부서에 대한 안내전화.

빅토리아: (250) 387-6121

밴쿠버: (604) 660-2421

BC 기타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7867

청각장애인용 전화 (TDD):

밴쿠버: (604) 775-0303; 기타지역: 1-800-661-8773

안내전화 근무시간: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정후원회(FAST): 이 협회에서는 다세대별 셀프헬프식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배우자 및 연장자들을 복합문화와 다세대식의 가족의 일원으로 참가를 유도하여 폭력, 학대, 스트레스, 고독장애에 대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되도록 일찍 중개를 시도하여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BC전역에 걸쳐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화: (604) 299-0005, 팩스: (604) 299-5921이다.

안전한 학교환경

케어네트워크에 소속된 BC 청소년 연맹: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케어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취인부담 장거리전화: (604) 689-3204

자유정보와 사생활보호 (FOIPOP): 추가 안내정보는 현지 학군사무실로 전화하여 FOIPOP 담당인을 부탁하거나 혹은:

Ministry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Privacy Office
PO Box 9144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H1

전화: (250) 356-7508, 팩스: (250) 387-6315, 혹은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PO Box 903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A4

빅토리아: (250) 387-5629, 팩스: (250) 387-1696

밴쿠버: (604) 660-2421

BC 기타지역 무료장거리전화: 1-800-663-7867

BC이민자서비스회: 영어이외 언어를 사용하는 BC 거주인, 이민자 혹은 난민들에게 BC정착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안내정보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604) 684-2561, 팩스: (604) 684-2266

BC장애인협회 (LDABC): 현지 LDABC 모임에 대한 안내정보와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4, 3402 27th Avenue

Vernon, BC

V1T 1F1

전화/팩스: (250) 542-5033, 이메일: lda-vernonbc@home.com

동성애자 부모와 친구들의 모임 (PFLAG): 동성애, 양성 및 양성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모임. 교육을 포함하여 동성애에 대한 안내정보와 동성애자들의 평등권리 옹호를 위한 모임이다.

밴쿠버: (604) 421-8084 혹은 (604) 468-1749

빅토리아: (604) 642-5171, 이메일: PFLAG@gayvictoria.com

피플스 로스쿨: 비영리, 비정당, 독립적 단체로서 BC주민, 특히 장애를 가진 주민을 위하여 공정한 서비스를 영어 혹은 기타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화: (604) 331-54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 이후에는 전화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팩스: (604) 331-5401, 이메일: staff@publiclegaled.bc.ca 웹사이트: <http://www.publiclegaled.bc.ca/>

주 동성애자 연락전화: 관련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안내전화. 통화가능시간: 월-토 오후 1-4시, 월, 수 및 금요일 오후 7-10시. 이외 시간에는 메시지 서비스가 나온다. "PRIDELINE BC" 무료장거리전화: 1-800-566-1170

청소년 반폭력 전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정보전달, 범죄예방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내전화. 연락처(BC내): 1-800-680-4264.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안전한 이메일 연락도 가능하다: <http://www.takingastand.com>

BC학부모고문위원회연맹 (BCCPAC)

BCCPAC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주 정부 수준에 수렴되고 PAC과 DPAC들이 소속지역 학교와 학군에 고문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British Columbia Confederation of Parent Advisory Councils

Suite 202, 1545 West 8th Avenue

Vancouver, BC

V6J 1T5

전화: (604) 687-4433

팩스: (604) 687-4488

이메일: bccpac@telus.net

웹사이트: www.bccpac.bc.ca

BCCPAC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장거리 전화: 1-888-351-9834.

도와주신 분들

Internal Advisory Team: Brenda Turner (Team Chair and BCCPAC 2nd Vice-President), Diana 내부고문위원회: 브랜다 터너 (회장 겸 BCCPAC 2회 부회장), 다이애나 멀포드 (BCCPAC 총무), 배브 호스커 (BCCPAC 1회 부회장), 헬렌 케머론 (BCCPAC 전무이사)

외부고문위원회: 낸시 라가나 (BCSTA), 낸시 하인즈 (BCTF), 세론 컷클리프 (BCPVPA), 프랭크 던헨 (BCSSA)

편집: 조이스 그램, 신시아 모페트

진행: 메리나 형

BCCPAC에서는 본 가이드를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학생, 학부모, 전문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chieve BC 홈페이지:

<http://www.achievebc.ca/>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gov.bc.ca/bvprd/bc/channel.do?action=ministry&channelID=-8382&navId=NAV_ID_province